

<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가맹계약을 체결**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본 서류가 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부산광역시장

美人街

[등 록 번 호] 20090300040

www.miinga.co.kr

[최초 등록일] 2009.11.11.

[최종 등록일]

미 인 가

정 보 공 개 서

미인가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미인가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는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주 소]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 1516, 센텀타워메디칼 1301

[전화번호] 051-747-7047 [팩스번호] 051-741-7048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가맹관리팀 / 051-747-7047

목 차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사용 브랜드	주 소			
미인가	미인가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 1516, 센텀타워메디칼 1301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개인사업자	1995.9.20	김성숙	051-747-7047	051-741-7048
	법인등록번호	해당없음	사업자등록번호	617-11-36388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사용 브랜드	주 소		
	사업(경영)기간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대표	김성숙	미인가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 1516, 센텀타워메디칼 1301		
	1995.9.20.~현재		김성숙	051-747-7047	051-741-7048
사용인 (임원)	이호준	미인가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 1516, 센텀타워메디칼 1301		
	2001.08.22.~현재		김성숙	051-747-7047	051-741-7048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브랜드 포함)을 인수·합병하거나 다른 기업(가맹사업 브랜드 포함)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美人街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미인가	
상 호	미인가 OO점	
상표(서비스표)	美人街	서비스표 등록번호: 4100822010000 (2002.12.12)
	미인가 MIINGA	서비스표 등록번호: 4101595640000 (2008.01.15)
광 고		
그 밖의 영업표지		

5. 최근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최근 동안의 재무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미포함)

연도	총자산	총자본	총부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년	586,511	301,366	285,145	471,087	36,978	36,833
2022년	670,258	300,570	369,687	769,324	62,188	48,904
2023년	744,230	409,173	335,056	805,985	78,705	47,602

2) 당사의 최근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장 -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사업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관련임원	김성숙	대표	2001.08.22.~현재	대표	회사 업무 총괄
관련임원	이호준	이사	2001.08.22.~현재	이사	가맹사업 관리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작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3년 12월 31일	2	1	3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미인가]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가맹사업을 경영한 적이 없습니다.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등록만료일
美人街 (상표권)	영업장 내 사용	출원 (2001.06.25) 등록 (2002.12.12)	출원 4120010012292 등록 4100822010000	김성숙	2032.12.12
미인가 MIINGA (상표권)	영업장 내 사용	출원 (2007.03.05) 등록 (2008.01.15)	출원 4120070006140 등록 4101595640000	김성숙	2028.01.15
미용용 얼굴가면의 제조방법 (특허실용권)	영업장 내 사용	출원 (2003.05.15) 등록 (2005.05.30)	출원 10-2003-0031031 등록 10-0494134-0000	김성숙	2023.05.15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 (<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1. 해당 가맹사업[미인가]을 시작한 날: 2010년 11월
(직영점을 시작한 날: 1995년 9월 20일)

2. [미인가] 연혁

가맹본부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미인가	미인가	김성숙	1995.9~현재	부산 해운대 우동 1078-1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 1516, 센텀타워메디칼 1301

3. 당 가맹사업의 업종

영업표지	업종	
미인가	대분류	소분류
	이미용	에스테틱

4. 최근 3년간 사업연도 말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역	2021.12.31.			2022.12.31.			2023.12.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1	-	1	1	-	1	1	-	1
서울	-	-	-	-	-	-	-	-	-
부산	1	-	1	1	-	1	1	-	1
대구	-	-	-	-	-	-	-	-	-
인천	-	-	-	-	-	-	-	-	-
광주	-	-	-	-	-	-	-	-	-
대전	-	-	-	-	-	-	-	-	-
울산	-	-	-	-	-	-	-	-	-
세종	-	-	-	-	-	-	-	-	-
경기	-	-	-	-	-	-	-	-	-
강원	-	-	-	-	-	-	-	-	-
충북	-	-	-	-	-	-	-	-	-
충남	-	-	-	-	-	-	-	-	-
전북	-	-	-	-	-	-	-	-	-
전남	-	-	-	-	-	-	-	-	-

경북	-	-	-	-	-	-	-	-	-
경남	-	-	-	-	-	-	-	-	-
제주	-	-	-	-	-	-	-	-	-

5. 최근 3년간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1	2	-	-	2	-	-
2022	-	-	-	-	-	-
2023	-	-	-	-	-	-

6. 해당 가맹사업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 맹사업 현황

당사는 [미인가] 외에는 가맹사업을 경영하고 있지 않으며 당사의 특수관계인
도 가맹사업을 경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7.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 준

해당사항 없음

8.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가 없습니다.

9.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당사는 광고 및 판촉비로 사용한 내역은 64,474천원입니다. 해당 [미인가]
의 [2023년]에 해당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
은 이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10. 가맹금 예치 기관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민은
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부서	주소	전화번호
---------	-------	----	------

국민은행 해운대우동	일선창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 동 1078-1	051) 743-6601
---------------	------	--------------------------	----------------

자세한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는 가맹금을 당사의 소정서식을 작성하여 [국민은행]에 [계약 체결 다음 날까지] 예치신청 하여야 합니다. [예치방법은 국민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다운받아 설치한 후 “예치 서비스”를 클릭한 다음 당사를 찾아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귀하는 또한 [국민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 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1.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해당없음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Ⅳ.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미인가]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美人街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교육비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16,500]				
가맹비	11,000	계약 체결과 동시	영업 개시 이 전까지 계약 해지	영업 개시 또는 서비스가 제공 시 해당 대가는 제외하고 반환	※영업표지 사용대가는 계약의 만료시까지 일로 계산하여 경과한 기간의 해당분의 금액 은 소멸, 잔여기간의 해당분의 금액은 반환
교육비	5,500	계약 체결과 동시	영업 개시 이 전까지 계약 해지	영업 개시 또는 개업교육 제공 시 반환 안됨	

① 가맹비는 영업표지 사용대가(40%), 개업지원 대가(40%), 매뉴얼 등 자료제공대가(20%)로 구성된다.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 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천원/부가세없음)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총계	[3,000]			
계약이행 보증금	3,000	계약 체결과 동시	가맹금 미지급, 본사가 공급한 물품의 미수금, 기타 홍보비 등의 미수금의 제외하고 반환	1. 계약종료 시 잔존채무액 을 공제 후 상호, 서비스포 등 당 가맹사업과 관련된 영업표지의 철거가 완료된 후 정산함을 원칙으로 함 2. 별도의 이자가 없음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
금은 [19,500]천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합계	19,500
최초 가맹비	11,000
최초 교육비	5,500
보증금	3,000

※ 보증금은 부가세 없음

-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V.
1. 물품 구입 및 임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급]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3.3M ²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고
총계		104,500				기준 30평(99m ²)
필수설비 (기기)	가맹본부	33,000	1,100	설치 시작 3일 이전	공사발주 전 계약해지	※당사의 기준에 부합 되도록 시설되어야 함
필수설비 (집기)	가맹본부	3,300		설치 시작 3일 이전	공사발주 전 계약해지	※당사의 기준에 부합 되도록 시설되어야 함
간판	협력업체	3,300		공사 시작 3일 이전	공사발주 전 계약해지	※ 6M기준
인테리어 (점포 내장공사)	협력업체	49,500	1,650	내부 인테리어 공사 시작 3일 이전	공사발주 전 계약해지	3.3m ² 늘어날 때마다 1,650천원 추가부담
최초 공급	가맹본부	9,900		물품 공급	발주 전	※ 매장에 따라 달라

상품 비용				1일 이전	계약해지	질 수 있음
기타 개점에 소요되는 비용	가맹본부	3,300		가맹개설 전일까지	발주 전 계약해지	소모품비 등
	가맹본부	2,200		가맹개설 전일까지	발주 전 계약해지	판촉물 등

[력서리급]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3.3M ²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고
총계		147,400				기준 30평(99m ²)
필수설비 (기기)	가맹본부	55,000	1,833	설치 시작 3일 이전	공사발주 전 계약해지	※당사의 기준에 부합 되도록 시설되어야 함
필수설비 (집기)	가맹본부	3,300		설치 시작 3일 이전	공사발주 전 계약해지	※당사의 기준에 부합 되도록 시설되어야 함
간판	협력업체	5,500		공사 시작 3일 이전	공사발주 전 계약해지	※ 6M기준
인테리어 (점포 내장공사)	협력업체	66,000	2,200	내부 인테리어 공사 시작 3일 이전	공사발주 전 계약해지	3.3m ² 늘어날 때마다 2,200천원 추가부담
최초 공급 상품 비용	가맹본부	12,100		물품 공급 1일 이전	발주 전 계약해지	※ 매장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음
기타 개점에 소요되는 비용	가맹본부	3,300		가맹개설 전일까지	발주 전 계약해지	소모품비 등
	가맹본부	2,200		가맹개설 전일까지	발주 전 계약해지	판촉물 등

[별도공사비용 : 전기증설, 냉난방기, 철거공사, 조경공사, 외부환풍, 인허가비용 등
은 별도비용입니다.]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
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위 표의 3.3m²당 금액의 산정은 기준 면적을 기준으로 산술적으로 나눈 금액에
불과하며, 이는 실제 소요되는 비용과는 다르며, 품목에 따라 면적과는 성질상 비
례하지 않아서 실제 면적과는 비용이 같거나 적은 등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을 유의 바랍니다.]

[위 표에 기재된 비용 중 인테리어(점포 내장공사)를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
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와 거래할 경우 감독비로 3.3m² 당 [500,000]원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가맹점사업자	가맹본부와 상담 후 가맹희망자가 직접 원하는 점포를 파악 → 가맹본부에 통지와 협의 → 최적의 입지 도출 → 가맹본부의 승인을 구함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한 특별한 조건이 없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특별한 기준 없음	특별한 기준 없음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만18세 이상일 것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장 -

8) 당사는 가맹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습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광고분담금에 대한 세부 분담기준은[“V. 9.광고 및 판촉 활동”]에 나와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로열티	가맹본부	베드 수 × 100	다음 월 10일			
광고 분담금	가맹본부	당사의 기준 에 따라 가 맹 점 사 업 자 측이 배분하 여 분담	분담금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분담금 납부 후 1년간 광고를 하지 않은 경우	광고집행 시 반환 안됨	전국광고 지역광고 “V.9. 광고 및 판촉 활 동” 참조
교육훈련비	가맹본부	연 800	교육 실시 3일 이전	교육비 납부 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교육 시행 후 반환 안됨	교육 필요시 지급 (추정비용)
영업포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해당없음					
POS 사용료	해당없음					
점포환경개선 비용	계약 상대방	가맹본부 분담 부분 제외 나머지 모두	개별청구	발주 전 소요 비용 공제 후 반환		
지연 이자	상대방	연 20%	개별 청구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여서 반환 안됨		

[당사의 광고분담금이나 교육훈련비는 일정하게 받는 것이 아니라, 필요시 사전통지를 하고 실비 수준에서 청구하고 있습니다.]

2) 구입요구 품목을 통한 가맹금 지급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장 -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

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독 항목	내 용	시기	비고
회계관리	실재제고 수량을 조사하여 장부상 제고와 비교	1년 2회	문의: 가맹본부
QSC관리	가맹점사업자의 매장 QSC 점검	수시	문의: 가맹본부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 지급해야 하는 비용이 없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가맹금 반환청구는 최초계약에 한 합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합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과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가맹금 반환청구는 최초계약에 한 합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가맹금 반환청구는 최초계약에 한 합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해당 가맹사업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 받는 양수인은 당사에 교육비 [5,500]천원(부가세포함), 계약이행보증금 [3,000]천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운영권 양도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V.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에 나와 있습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귀하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당사의 해당가맹사업 브랜드임을 알 수 있는 어떠한 식별기호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가맹점사업자의 모든 물건으로부터 당사의 브랜드 등 영업표지 일체를 철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합니다.

귀하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당사가 제공한 모든 운영매뉴얼 및 양식, 보고서, 서신, 운영파일 등 점포의 운영에 관련된 문서를 당사로 반환하여야 하고, 관련된 어떠한 사본이나 기록도 보유할 수 없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귀하가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약종료 후의 조치	관련 계약조문
○ 당사의 핵심 Know-how 사용금지	7조
○ 상표, 상호 기타 일체의 영업표시의 사용 금지	7조
○ 간판 등의 일체의 영업표시를 종료 후 7일 이내에 철거하고 원상회복하여야 함	7조
○ 임대물이 있을 경우 그 반환이 완료되거나 하자가 있을 경우 그 보상이 완료되어야 함	7조
○ 전화 안내 중 당사의 상호 및 기타 유사한 안내문 삭제	7조
○ 당 가맹사업을 위하여 제공된 프로그램이 있을 경우 이를 삭제	7조
○ 계약이 만료되거나 해지로 종료되는 경우, 미개봉이나 미사용의 완전한 상품 · 자재에 한해 구입한 금액의 ____%로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음. 단, 상	22조

품 · 자재가 파손, 변질된 경우 혹은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경과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상기의 경우 반품이나 하자에 관한 세부운영규칙이나 매뉴얼이 있을 경우 이에 따름.	22조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 · 용역 · 설비 · 상품 · 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장 -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 · 하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장 -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2023년 별도의 경제적 이익의 수취에 대한 사항은 없습니다.

2. 거래 주선의 대가 내역

1) 당사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2023년 별도의 경제적 이익을 수취에 관한 사항은 없습니다.

2) 당사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2023년 별도의 경제적 이익을 수취에 관한 사항은 없습니다.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Face 특수관리	노화,주름특수관리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음	1회 위반: 경고 2회 위반: 계약 해지	
	탄력,리프팅특수관리			
	기미,화이트닝특수관리			
	여드름재생관리			
	여드름관리			
	수분,보습특수관리			
	민감,예민,트러블피부			
베이직관리	비타민C크리닉			

바디특수관리	스킨스켈링, 수분공급크리닉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음	1회 위반: 경고 2회 위반: 계약 해지	
	등 경락마사지			
	복부 경락마사지			
	셀룰로이즈 마스크			
	콜라겐 마스크			
	시트 마스크			
	커피스컬프트비만관리			
	리포스톡 전신비만관리			
	부위별비만관리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는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이 없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상품·용역명	권장가격(단위: 원)	가격 통보 방법	비고
Face 특수관리	전신경락성형마사지	150,000(1회)	사전 통지	
	웨이스경락성형마사지	70,000(1회)	"	
	웨이스경락마사지	500,000(10회)	"	
	노화,주름특수관리	800,000(5회)	"	
	탄력,리프팅특수관리	500,000(5회)	"	
	기미,화이트닝특수관리	500,000(10회)	"	
	여드름재생관리	840,000(3개월)	"	
	여드름관리	500,000(10회)	"	

베이직관리	수분,보습특수관리	500,000(10회)	"	
	민감,예민,트러블피부	400,000(10회)	"	
	비타민C크리닉	20,000(1회)	"	
	스킨스켈링, 수분공급크리닉	30,000(1회)	"	
	등 경락마사지	30,000(1회)	"	
	복부 경락마사지	30,000(1회)	"	
	셀룰로이즈 마스크	30,000(1회)	"	
	콜라겐 마스크	7,000(1회)	"	
	시트 마스크	5,000(1회)	"	
바디특수관리	커피스컬프트비만관리	1,300,000(10회)	"	
	리포스톡 전신비만관리	1,200,000(10회)	"	
	부위별비만관리	50,000(10회)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4.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에스테틱, 미용 업종 피부미용	미인가	-

☞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가맹점사업자의 동의 없이 당해 브랜드와 상기 기재된 범위와 같은 동일업종의 가맹점 및 직영점을 설치하지 않습니다.

2) 영업지역의 설정 기준과 변경 가능성 및 그 사유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점포소재지로부터 반경 1,000M	계약 시 협의에 의한 영업지역 설정 별지에 표시된 지역을 원칙으로 함

[※ 설정 기준]

영업지역 설정기준
계약시 협의하여 가맹계약서에 별첨함 별첨이 없을 경우 점포소재지로부터 반경 1,000M를 영업지역 함 단, 영업지역 내에 있는 백화점, 할인점, 역사(기차, 지하철) 등 대규모 유통집객 시설은 귀하의 영업지역에서 제외됨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 시 상기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상기와 같습니다.]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당사’ 브랜드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 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7) 그 밖의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계약기간 중 영업지역 이외의 타지역으로 점포를 이전할 경우 기존의 가맹계약이 해지가 되며 신규로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호협약이 있을 경우 이에 따릅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해당없음	100%	해당없음	해당없음

- 2023년 가맹점이 없어 가맹점 매출액에 대한 사항은 없습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가맹점)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해당없음	해당없음

- 2023년 가맹점이 없어 가맹점의 전용상품에 관한 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의 기간

해당 가맹사업의 최초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이며, 이후 재계약(갱신)의 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2]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 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5조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5조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5조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 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5조
○ 당사의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5조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5조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계약갱신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6조
가맹비, 교육비, 상품대금 등 금전지급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6조
필수교육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6조
당사의 동의 없이 영업양도나 승계, 담보제공, 사업장위치 변경한 경우	제6조
당사와 협의 없이 영업시간이나 영업일수를 위반한 경우	제6조
당사의 동의 없이 상호협의를 하거나 약정된 광고나 판촉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	제6조
노후화된 인테리어, 집기, 설비 등의 교체·보수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	제6조
고객서비스불량과 제품가공, 처리의 미숙으로 소비자에게 년3회 이상의 항의가 있는 경우	제6조

‘필수품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지 않거나, ‘부수품목’의 품질기준을 준수를 위반한 경우	제6조
가공방법, 판매상품의 종류, 판매방식, 적정재고유지를 준수하지 않고 임의로 변경하거나 추가·삭제한 경우	제6조
영업상 비밀 공개금지나 경업금지의무의 위반사유가 있는 경우	제6조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독창성이 유지되도록 당사로 으로부터 제공받은 운영매뉴얼이나 세부운영규칙을 미준수	제12조
당사 직원(슈퍼바이저)의 점포에 출입이 영업상태를 원활하게 점검을 방해하거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제12조
운영점검 결과를 지적된 사항을 시정조치하지 않은 경우	제12조
청결한 점포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후화된 실내장식, 집기, 설비 일체를 관리하지 않은 경우	제12조
제품의 가공방법, 상품종류, 판매방법, 서비스제공 등에 대하여 당사의 이미지 및 서비스의 통일성과 독창성을 유지하기 위한 매뉴얼이나 운영지침에 따르지 않은 경우	제21조
당사의 사전승인 없이,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독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정한 상품이나 메뉴, 서비스 이외의 상품이나 메뉴,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제공·판매한 경우	제21조
기타 본 계약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하여 계약관계를 지속시키기 어려운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제6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할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 통지 없이 즉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가맹계약서에도 명기되어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제 6 조 2항
○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정지된 경우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양 당사자간의 서면으로 된 합의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계약 수정 사유	관련 계약조문
양당사자 쌍방의 서면 합의	제 33 조

[당사의 협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서면 통지 → 수정계약서(안) 검토 → 승낙여부 서면 통지 → 수정 완료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이 없으면 거부한 것으로 결정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운영권을 다시 사 들어 직영점 체제로 운영하는 환매제도가 없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양도승인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문의: 가맹본부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교육비 및 계약이행 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우에는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규가맹계약일지라도 가맹점 모집비용, 개점행사비 등이 일반적인 신규가맹계약보다 적게 소요될 경우에는 비용 소요액에 상응하는 가맹금을 당사와 협의하여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양도승인조건]

양도 승인 조건	관련 계약조문
당사는 다음 모든 조건이 만족된 경우, 양도에 대한 승인을 비합리적으로 보류하지 않는다. ○ 가맹점사업자가 당사 및 당사의 공식지정업체에 대한 모든 금전적인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 영업양수인이 본 계약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의 모든 의무를 인수했는지를 증명하기 위해 당사가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문서를 제출한 경우 ○ 양도일 전에 영업양수인 또는 매장의 관리자가 점포개시 전에 수료해야하는 교육을 완료한 경우 ○ 영업양수인이 양도일 현재 당사의 신규 가맹점사업자의 선정조건, 인성, 사업경험, 재정능력에 부합한 경우 ○ 양도하는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당사의 영업상 비밀 공개금지의 규정을 지켰다고 서명하는 경우 ○ 영업양수인이 교육비 및 계약이행보증금의 금전적 지급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제 17 조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정보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하거나 상속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비고
상속	본부 승인시 가능	모든 권리의무	상속인이 서면으로 상속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 → 상속 여부 통지 → 가맹점운영권 상속 완료	
대리행사	본부 승인시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의무	가맹점사업자가 2개월 전 서면으로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업무위탁	본부 승인시 가능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의무	가맹점사업자가 2개월 전 서면으로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귀하가 [미인가]과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고 승낙을 얻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 에스테틱, 미용 업종 피부미용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문의: 가맹본부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미인가]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권장)	영업일수	비고
10:00 ~ 24:00 (14시간)	매월 26일(2월은 24일) 이상 점포를 개장하여야 하고 연속하여 5일 이상 휴업할 수 없음	문의: 가맹본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9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개인 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종업원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고
3명 이상	직접 근무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美人街

관리·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담당팀	비고
품질(quality)	담당자 매장 방문 → 품질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 완료	수시	가맹본부	
서비스(service)	담당자 매장 방문 → 서비스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 완료	수시	가맹본부	
청결(clean)	담당자 매장 방문 → 청결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수시	가맹본부	
회계관리	담당자 매장 방문 → 회계장부나 POS검사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2회/1년	가맹본부	

[당사는 감독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가맹점 관리표를 사전에 제공합니다.]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해당 가맹사업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 및 지역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 성격	부담비율		분담 절차	비고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광고 전체 행사	브랜드 및 상품광고	광고비의 50%	광고비 총액의 50%를 가맹점사업자측이 배분하여 부담	광고 계획 공고 → 가맹점의 광고참여 여부 결정(약정 또는 동의) → 가맹점분담액 명세서를 통지 → 통지 후 7일까지 가맹점분담액 입금	대중매체 광고, 명절, Day 이벤트 행사 (전국 행사, 지역별 행사)
	브랜드 및 상품광고+가맹점모집광고	광고비의 75%	광고비 총액의 25%를 가맹점사업자측이 배분하여 부담		
	가맹점모집광고	전액 부담	없음		
판촉 전체 행사	통상적인 전체 행사	통일적인 홍보물 등의 디자인, 시안 등의 제작비용 등은 당사가 부담함	가맹점사업자가 직접 판매하는 상품의 할인비용이나 직접 제공하는 경품·기념품·팜플렛·전단 등의 홍보물 등의 비용은 가맹점사업자가 부담	행사 계획 공고 → 가맹점의 행사 참여 결정(가맹사업법에 따른 약정 또는 동의) → 가맹점부담액 제시 → 행사 시작	월별 판촉 행사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별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별 개별 판매촉진 및 광고활동”을 위한 팜플렛, 전단, 리플렛, 카탈로그 기타 판촉물을 제작할 경우, 가맹사업 전체의 통일성과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그 계획과 소재 등을 당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당사의 대표전화와 팩스번호, 홈페이지주소, 이메일을 동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당사의 영업비밀보호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조문 제 28 조 [“을”의 영업상 비밀 공개금지 및 경업금지의무]
① “을”은 계약과정 및 점포의 경영상 알게 된 “갑”의 영업상 비밀을 계약기간 중이나 계약종료 후를 불문하고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② “을”은 “갑”의 동의 또는 승낙 없이 “갑”이 작성한 교육 및 세미나자료, 영업 관련 자료 등을 인쇄 또는 복사하거나 인터넷 등에 공표하는 등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본 계약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계약조문 제 9 조의 2 [손해배상액의 예정]
① 점포개설 후 계약해지에 책임이 있는 “갑” 또는 “을”은 상대방에 대하여 위약금을 지급하되 그 위약금은 다음과 같다. : 일금 오십만원(W500,000) X 계약기간 잔여월수 ② 점포개설 전 “을”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제8조 1항의 가맹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하며 “갑”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제8조 1항의 가맹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한다. ③ 제2항의 위약금의 지급은 가맹비에서 이미 제공한 서비스 대가를 공제하고 이후 위약금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관련 계약조문 제 9 조의 3 [손해배상액]
“갑” 또는 “갑”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을”에게 발생한 손해의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45]일 정도가 예상되며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45일 내외	124,000~166,900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D-45	
사업 설명·상담	- 정보공개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현황문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 가맹계약서 제공	D-45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D-34~31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D-30	
가맹금 예치	- [국민은행]에 가맹금 예치	D-29(1일)	19,500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D-27~25(3일)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24(1일)	104,500~147,400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D-24~5(20일)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D-14~4(10일)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와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법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분쟁 해결 절차	비고
분쟁 발생 → 당사와 가맹점사업자와 면담 → 당사 조정안 제시 → 조정안 수락 시 분쟁 종료	

상기와 같은 절차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맹분쟁	관련 계약조문
본 계약과 관련하여 甲이 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乙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며, 乙이 甲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甲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함	제 36 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점포환경개선은 원칙적으로 가맹점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진행하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부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점포환경개선 사유	●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 비용 항목	● 간판교체 비용 ●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

	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가맹본부 부담 비용 비율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지급 절차	●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 <분할지급 시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비용 부담 제외 사유	●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와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가 점포환경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부 부담하여야 합니다.]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가맹점의 판매촉진을 위한 행사 시에 가맹본부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개별 계약에 의하여 협의로 결정이 되며 지원제도는 가맹본부의 경영사정 등에 의하여 가맹계약 기간 중이라도 지원여부, 지원항목, 그 범위가 변경 또는 추가될 수 있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당사의 경영활동에 관한 자문은 통상적인 가맹본부의 가맹점관리, 교육, 통제와는 별도로 진행되는 사항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경영활동에 관한 자문에 관한 사항은 개별 계약에 의하여 협의로 결정이 되며 자문의 여부, 내용, 구체적인 절차는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별도의 신용 제공 등을 시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용 제공 등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현재 이에 대한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VIII. 교육 · 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 · 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해당 가맹사업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 ·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개업 교육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소양 서비스 마인드 기술적 지식 배양	실습교육 집단 강의	가맹계약 체결 후 개업하기 이전까지 이수하여야 함	필수 교육
운영 교육	서비스 제고 매출증대 방법	실습교육 집단 강의	교육실시 1개월 전에 <u>교육시간</u> 및 장소 등을 통지	필수 교육
특별 교육	신제품 교육 영업방침 행정조치에 따른 소집교육	실습교육 집단 강의	교육실시 7일 전에 <u>교육시간</u> 및 장소 등을 통지	필수 교육

[※운영교육과 특별교육은 개업 이후 교육으로 일정이나 기한이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해당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단위: 천원)	비고
개업 교육	10일	11,000	최초 계약시 이수
운영 교육	4일	년 400	추정금액
특별 교육	4일	년 400	추정금액

[※운영교육과 특별교육은 개업 이후 교육으로 비용이 확정되어 있지 않고 필요시 금액을 사전통지 합니다. 그 금액은 통상 교육에 필요한 실비수준입니다.]

[※교육을 위한 교통비, 숙식비는 귀하의 자부담입니다.]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4.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당사의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교육 불 이수 시 제재	관련 계약조문
개업교육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맹점의 개설을 유예될 수 있음	제10조
당사가 정한 교육 및 훈련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거나 수료하지 않은 경우 계약해지 사유가 됨	제6조
가맹계약 갱신이 거절될 수 있음	제5조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1	부산	센텀점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 1516, 센텀타워메디칼 1301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일)

2023년 기준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10330일	1995.09.20.부터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805,985천원	손익계산서

- 끝 -

[재무현황] 2022/2023년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장 -

美人街

[재무현황] 2021/2022년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장 -

美人街

美人街

美人街

美人街

[별첨] 점포리스트 (2023년말 기준)

A. 가맹점			
번호	점포명	전 화 번 호	주소
1	해당없음		
2			
B. 직영점			
1			

[서식]

(앞 쪽)

가맹금예치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상호(가맹점)명	
	성명(대표자)	
	주소(사무소)	(전화:)
가맹 본부	상호명(영업표지)	
	성명(대표자)	
	주소(사무소)	(전화:)
예치가맹금		₩ (금 원 정)
신청인의 계좌		
가맹본부의 계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7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맹금을 예치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치기관의 장 귀하 지점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인근가맹점현황문서 수령확인서

확인서1: 정보공개서 수령 확인

본인은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충분한 설명을 듣고 제공받았음을 확인합니다.-(체크□)

확인서2: 가맹계약서 수령 확인

본인은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라 가맹계약서를 충분한 설명을 듣고 제공 받았음을 확인합니다.------(체크□)

확인서3: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수령 확인

본인은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따라 창업 예정지 인근 10개 매장의 현황을 충분한 설명을 듣고 제공 받았음을 확인합니다.---(체크□)

확인서4: 비밀 유지 약약

본인은 귀사의 정보공개서 등을 수령하며, 귀사의 영업비밀 또는 사업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을 것임과 본 계약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에 귀사에게 수령한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등의 자료를 신속하게 반환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약약합니다.

제 공 일 자 :	
수 령 장 소 :	
수령자 주소 :	
전 화 번 호 :	010-
수 령 자 :	(서명 또는 인)
가 맹 본 부 :	주식회사 대표이사 (인)
※ 가맹본부란을 제외한 이외의 기재란은 반드시 가맹점주가 자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